

의안번호	2219427
의 퇴 인	서천호의원
회 답 일	2026.9.10.
추계번호	26B31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 (정의)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 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의무규정
2	안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 (정의)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고양이를 포함하는 등 등록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임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른 동물등록 수수료는 1만원이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가격은 개당 3만원~5만원 수준으로, 동물등록에 따른 비용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지원되고 있음
 - 일례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5조제3호¹⁾에 따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반려묘의 규모, 무선식별장치 장착 비용 및 동물등록 시스템의 고도화 수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추가로 등록될 동물의 규모 및 이에 따른 무선식별장치 장착 수요와 시스템 고도화 필요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구체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제25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4. 무선식별장치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6.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